

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742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2. 4. 13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나, 조례제정 미완료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조례제정 완료 및 농기계 임대수입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심의 의결 요구함.

2. 주요골자

-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1,528천원의 세입세출계획을 추가하여 200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 요구함.

200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현황

(단위:천원)

부 서 별	기 금 명	수			지			비 고
		2002년 변경계획	2002년 당초계획	증(△)감	2002년 변경계획	2002년 당초계획	증(△)감	
계		21,528	-	21,528	21,528	-	21,528	
○농 축 산 과	농기계임대사업기금	21,528	-	21,528	21,528	-	21,528	

농 기계 임대 사업 기금 운용 계획

1. 운용 총칙

가.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

- (1) 기금명칭 :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
- (2) 설치근거 :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
- (3) 설치목적 :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저가로 임대하여 주고 그 임대료를 적립, 추후 내구년수가 지난 농기계를 교체하여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함
- (4) 설치년도 : 2002년 1월 15일

나. 기금조성 및 운용

- (1) 기금 운용 현황 (단위 : 천원)

2001년도말 현재액(A)	2002년 운용계획			2002년도말 현재액(A+B)	비 고
	수 입	지 출	증 감(B)		
-	21,528	-	21,528	21,528	

- (2) 재원조성 : 재산임대수입(농기계임대수입), 이차수입 등

- (3) 지원기준

구 분	지원대상	지원기간	지원조건	지원내역
농기계 임대	농기계공동이용조직	1년	임대로 1년선납 임대계약 체결	트랙터, 승용이앙기, 콩수확기, 콩정선선허기

- (4) 지원대상 :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작목반, 생산자 단체 등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

2. 기금운용계획

가. 자금수지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				지				출	
항 목	2002년 변경계획	2002년 당초계획	증 감	항 목	2002년 변경계획	2002년 당초계획	증 감		
합 계	21,528	-	21,528	합 계	21,528	-	21,528		
0 전년도 이월금				0 인 건 비					
0 출 연 금				0 물 건 비					
0 차 입 금				0 고유목적사업비					
0 용 자 금 회 수				0 장 학 금					
- 원 금				0 융 자 금					
- 이 자				0 차 입 금 상 환					
0 재산임대수입	20,700	-	20,700	- 원 금					
0 이 자 수 입	828	-	828	- 이 자					
- 적립금이자	828	-	828	0 이 차 보 전 금					
- 융자금이자				0 내 부 거 래					
- 기 타 이 자				0 기 타					
0 기 타 수 입				0 다음년도이월금	21,528	-	21,528		

나. 수입계획

(단위:천원)

예 산 과 목		2002년 변경계획	2002년 당초계획	증 감	산 출 기 초
장	관 항 목				
200	세외수입	21,528	-	21,528	
210	경상적세외수입	21,528	-	21,528	
211	재산임대수입	20,700	-	20,700	
	211-02 공유재산임대료	20,700	-	20,700	○농기계임대수입 20,700,000원×1회 = 20,700
216	이자수입	828	-	828	
	216-01 공금예금이자수입	828	-	828	○적립금 이자수입 20,700,000원×4% = 828
	216-04 기타이자수입	-	-	-	
220	임시적세외수입	-	-	-	
222	순세계잉여금				
	222-01 순세계잉여금				
228	잡수입				
	228-09 기타잡수입				
세 입 합 계		21,528	-	21,528	

다.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2002년 당초계획	증감	산출기초
장	관	항목			
3000 경제개발비			-	21,528	
3100 농수산개발비			-	21,528	
3110 농정관리			-	21,528	
3113 농산유통관리			-	21,528	
400 예비비등			-	21,528	
420 기 타			-	21,528	
706 기타내부거래			-	21,528	03) 적립금 ○여유자금 적립 = 21,528
세출합계			-	21,528	

3. 연도별 기금조성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 연도별	조 성 액							사 용 액					잔액 (A-B)
	계(A)	기금 전입금	차입금	융자(원금) 회수금	재산임대 수입	이 자 수입	기 타 수입	계(B)	고유목적 사업비	융자금	기 관리비	기 타 경 비	
1995													
1996													
1997													
1998													
1999													
2000													
2001	-							-					-
합 계	-							-					-

4. 적립기금 운영명세

(단위:천원)

구분 적립기금명	근거법규	설치목적	설치 년도	운용관서	재원의조달	적립액			2001년도 사용액	2001.12.31 현재액	기 보 관 상 황
						2000년도 까지	2001년도	계			
파주시농기계 임대사업기금	파주시농기계 임대사업기금조례	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저가로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임대 료를 적립 추후 내구 년수가 지난 농기계를 교체하여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함	2002	농축신과	-	-	-	-	-	-	-

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나, 조례제정 미 완료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조례제정 완료 및 농기계 임대수입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심의 의결을 요구함.

□ 주요골자

-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1,528천원의 세입세출계획을 추가하여 200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 요구함

□ 기금조성 현황

(단위:천 원)

구 분 연도별	총 조성액				사용액 (B)	잔 액 (A-B)	비 고
	출연금	재산임대수입	이자수입	소계(A)			
계	-	20,700	828	21,528	-	21,528	
2002년도	-	20,700	828	21,528	-	21,528	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 57회 제2차 정례회의시 「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」에 대하여 심의

의결을 요구하였으나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조성과 관련된 「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」가 제정되기 이전에 동 기금 운용계획안이 수립되어 심의 요구되었기 삭제된 건으로써,

- 지난 제57회 제2차 정례회의시 「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」이 승인되어 동 조례가 제정 완료되었으며, 그동안 농기계 임대수입(20,700천원) 및 이자(828천원)가 발생되었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적합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나. 내용타당성

-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저가로 임대하여 주고 그 임대료를 적립, 추후 내구년수가 지난 농기계를 교체하여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지 방 제 정 법

제110조 (기금의 운용등)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지 방 자 치 법

제35조 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5. 기금의 설치·운용